

# 고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45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5. 2. 이쌍자 의원 등 5인  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5. 9.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5. 22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이쌍자 의원)

#### 가. 제정이유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등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책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기반 마련과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2)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 ~ 제4조)
- 3)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 ~ 제6조)
- 4) 재정지원(안 제7조)
- 5)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8조 ~ 제10조)

#### 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23조의3
- 2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27호
- 3) 예고기간: 2025. 5. 2.(금) ~ 2025. 5. 8.(목)[6일간]
- 4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#### ○ 제정 목적

-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책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.

#### ○ 주요 내용

##### - (안 제1조 ~ 제2조) 목적 및 정의

-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,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함.

##### - (안 제3조 ~ 제4조) 군수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

- 안 제3조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,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.

##### - (안 제5조 ~ 제6조)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, 실태조사

- 안 제5조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6조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##### - (안 제7조) 재정지원

- 먹거리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·법인 및 단체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.

##### - (안 제8조 ~ 제10조)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, 운영

-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·추진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,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.

#### 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안건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서 규정된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, 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5. 22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